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위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을 말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개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보증사고)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상 무자격자 등 해당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계약인 경우
5. 개별 하도급계약이 보증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거나, 제4조에 따라 효력상실 이후에 체결된 경우
6. 제6조 제3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개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사고 발생 당시(제4조에 따라 효력상실된 경우 효력상실 당시)의 최종 하도급계약내용(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 대금지급주기 등)을 기초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개별 하도급계약의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으로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
4.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되는 금액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제4조 (보증의 효력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1.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경우
3. 채무자와 조합간에 약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업무약정에서 정한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효력상실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채무의 이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증사고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개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기성금 수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기성내역 및 대금수령내용(어음인 경우 어음사본첨부)의 사실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

4.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 공사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사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 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한 기성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수령한 확정기성금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